

# 스웨덴 법무보호복지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System of Sweden

권준성\*, 공정식\*\*, 현문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Joon-Sung Kwon(overod998@gmail.com)\*, Jung-Sik Gong(Crime0824@daum.net)\*\*,  
Mun-Jung Hyun(hyunmunjung@naver.com)\*\*

### 요약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복유립 | 스웨덴 | 회복적사법 | 법무보호복지제도 | 지역사회기반 |

### Abstract

The method of suppressing recidivism through punishment centered on punishment is showing limitations through criminal policy research in many countries. As an alternative to this, a restorative judicial law aimed at returning criminals to members of socie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rdination of community members, victims, and perpetrators is emerging as a paradigm for crime prevention and recidivism.

Sweden is a representative welfare state and is confirming positive effects through correction of criminal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n addition, it has a stable system related to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system, and maintains a low recidivism rate and social security through scientific and reasonable operation using evidence-based principles in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process of operating programs. However, research on the legal protection system implemented in advanced welfare and correctional countries, including Sweden, is still insufficien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domestic legal protection system through a review of Swedish criminal policy and legal protection system, and to identify insufficient areas and complementary points of the domestic system to lay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domestic legal protection welfare system and expanding business.

■ keyword : | Northern Europe | Sweden |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System | Community Based-System |

접수일자 : 2022년 07월 21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19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8월 19일  
교신저자 : 공정식, e-mail : Crime0824@daum.net

## I. 서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8,134건에서 2019년 35,066건으로 24.6%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 당 범죄 발생 건수도 2018년 55.7건에서 2019년 67.6건으로 약 2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로 미루어볼 때, 국내 형벌주의에 입각한 국내 교정 정책과 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출소 후 재복역 인원의 비율은 2010년 22.5%에서 2019년 26.6%로 4%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5범 이상 교정시설에 재입소한 자는 2010년 51.9%에서 2019년 64.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범죄 발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소자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인 북유럽의 교정 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부와 극빈의 양면을 가졌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으며, 교정 선진국이자 인도주의 기반의 형사정책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2021년 기준 스웨덴의 10만 명 당 구금자 수는 70명으로[2], 10만 명 당 구금자 수가 105명인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한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복지 지향적인 접근을 근간으로 하나, 매우 관대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억압적 접근방식도 존재하는 편이다[3]. 이를 통해 볼 때, 스웨덴의 복지 철학과 교정 이념은 과거 억압적이고 형벌적인 범죄억제정책에서, 교화와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으로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체계적 질서구축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정복지의 이론과 정책을 정립함에 앞서 선진국가의 사례를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장래를 바라보고 이상적인 방향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을 찾고 사례의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의 선진 국가 중 스웨덴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운영 현황과 특징 및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관련 연구수행 및 정책과 제도 마련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념 및 국내외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주된 연구 대상인 스웨덴의 범죄 정책과 형벌 제도, 범죄유형, 범죄자 특성 등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와 관련한 스웨덴의 형사 사법 제도와 범죄 현황 전반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무보호복지제도의 분류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스웨덴의 제도를 살펴봄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시행되지 않는 스웨덴 교유의 제도와 법제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 중 국내 도입이 가능한 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교정 정책 및 법무보호복지제도와 비교·고찰하여 향후 정책과 제도에 발전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법무보호복지제도

‘법무보호복지’ 또는 ‘갱생보호’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지원이나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과 같은 물질적·정서적 원조를 지원하여 사회적응의 토대를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과정에서 출소자 개인에 대한 복지를 제공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범죄로부터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보호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국내에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법무보호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원호에서 점차 발전하여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상담과 이들의 심리, 욕구, 애로사항을 반영한 14개의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4].

## 2. 국내 및 북유럽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특성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법무보호복지제도를 대표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북유럽에서 법무보호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지역사회기관의 이념과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중추기관'을 표방하고 있어서 사회방위적 개념이 강한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의 지역사회기관들은 범죄경력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표방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적 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법무보호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개인의 동의와 신청이 전제되는 '임의적 갱생보호'와 동의와 신청 없이도 일정기간 보호가 유지되는 '강제적인 갱생보호'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강제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등의 제도를 말하고, 임의적 갱생보호는 사회 복귀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북유럽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대상자의 신청과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UN 결의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법무보호복지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북유럽국가들에서는 명확히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보장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즉,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갱생보호제도는 우리의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인 법무보호복지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나, 법무보호복지 대상자가 교정보호청 등의 소관이 아니며, 지역기관 및 단체에 따라 규정과 지원이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 3. 스웨덴 범죄정책의 이념과 특징

스웨덴의 범죄정책은 구금을 효과적인 범죄정책으로 여기지 않으며, 법원은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징역 외에 다른 효과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교정보호에 기반해 수행된 처벌에는 자유형과 보호관찰, 조건부 출소, 집중감독 등이 있다. 범죄정책에 대한 기초는 기본적으로 복지지향적(welfare-oriented) 접근이나, 다소 억압적 접근(repressive approach)도 존재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복지에 중심을 둔 접근이 우세해졌는데 이 시기 이후 전반적으로 형벌 범위가 감소하고 비범죄화 추세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이후 낙태, 포르노그래피 등도 비범죄화되었으며, 모든 형벌 종류와 사형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5].

이 같은 형사정책과 범죄대응 전략을 토대로 현재 스웨덴 교정보호청은 "더 나은 상태(Better out)"를 운영 이념으로 하고 있다. 형을 마친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자와 가깝게 일함으로써 대중과 대상자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 안보증진, 안전한 사회 기여를 이룩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스웨덴 교정보호의 4가지 비전은 범죄예방, 근절과 약물금지, 탈출 금지, 폭력·위협·괴롭힘 금지이다.

이러한 기초를 기반으로 스웨덴 교도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의 의무 노동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실내 유지보수, 제품 조립, 세탁 등과 병행될 수 있다. 또한, 재소자들이 원할 경우 풀타임에 가까운 충분한 공부시간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교정보호청은 120명 이상의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교도소를 이전하게 되더라도 이어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 교육의 범위에는 폭력행위, 공격성 및 범죄행위,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 활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 세션 뿐만 아니라 그룹 세션도 운영되며, 요가수업이나 건강 프로그램, 글쓰기 수업, 회화 등 직업과 연계된 수업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 대해 재소자들은 시

간당 13 스웨덴 코로나(원화 1,657원가량)를 받는다[6].

#### 4. 스웨덴의 형벌제도 및 범죄유형

스웨덴은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가장 가혹한 형은 종신형이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살인, 심각한 간첩행위, 심한 방화행위, 유괴, 심각한 파괴행위, 해상·항공 및 공항 파괴행위 등이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수감자들은 가석방이 되기 전에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하며, 형의 마지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석방되고 해당 기간은 보호관찰이 시행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스웨덴의 최근 범죄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스웨덴에서 발생한 형법 범죄는 주로 재산범죄(71.8%)와 대인범죄(23.7%)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범죄는 마약범죄(40.5%)와 교통범죄(27.6%)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7].

특별범죄 중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스웨덴에서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낙하는 경우 자유형을 면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따르도록 권고하는데, 이를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라고 한다. 이는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자는 범죄자로 분류되긴 하나 소위 피해 없는 범죄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을 통한 약물 중독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95%로 매우 높으며, 여성의 비율은 약 5%로 나타났다[6].

#### 5. 스웨덴의 범죄자 특성

2020년 기준 스웨덴에서 발생한 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94%, 여성이 6%로 남성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5~29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징역형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력범죄가 31%(164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마약범죄와 밀수가 27%(1450건), 성범죄가 11%(593건), 강도가 9%(477건), 경범죄가 5%(249건), 사기·횡령·채권 관련 범죄가 4%(220건), 공공 및 국가 관련 범죄가 3%(143건), 음주운전이 1%(63건), 음주운

전이 아닌 교통위반이 0%(24건)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범죄는 8%(408건)이었다.

집행된 형량의 경우, 총 5,276명의 대상자 중 2년에서 4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1,694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4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1,299명(24.6%),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723명(13.7%), 종신형을 포함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579명(11.0%),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462명(8.7%), 2년에서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319명(6.0%), 2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200명(3.8%) 순으로 나타났다[6].

### III.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틀

본 연구는 스웨덴의 보호관찰 제도와 법무보호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연구 논문 및 국가 보고서, 정부 통계 등 다양한 문헌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유럽국가 중 스웨덴의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운영 방식과 사례를 소개하고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무보호복지제도의 현실 상태와 향후 우리나라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지원 유형을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유형에 따라 생활 및 가족지원, 취업 지원, 상담 지원, 인증제도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고, 기타 법무보호복지제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스웨덴의 특수한 법무보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스웨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IV. 스웨덴의 법무보호복지제도

국내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무보호(갱생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법령에 기반해 지방자

치단체의 협력을 보장한다. 즉, 스웨덴에서는 법무보호 대상자에 관한 지원이 법적으로 교정보호청의 의무가 아니며, 지원과 규정 역시 지역사회기관과 각 단체에 따라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6].

이와 관련해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 지원, 가족지원, 취업 지원 등 스웨덴의 갱생보호 사업 대부분은 교정보호청과 지역사회 기관, 비영리 단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보호복지제도는 크게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 지원, 상담지원으로 분류되며 이에 관한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대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 및 가족지원

스웨덴 교정보호청에서의 생활 및 가족지원을 위한 작업은 대부분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을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황이 개선되고 사회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과 아이들의 지원 및 도움이 장려된다.

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회복지부에 연락해 사회복지 서비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세 등 가족의 생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소자 및 재소자의 자녀와 청소년 역시 교정보호청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도록 장려하고 있다[6].

## 2. 취업지원

### 2.1 크라미(Krami)

크라미는 스웨덴의 국가고용청과 교정보호청이 스웨덴 전직 범죄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시키기 위한 국가협약이자 재활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출소자가 고립되는 것을 막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크라미는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와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운영된다.

크라미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며, 고용주로서 크라미를 통해 참여자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크라미 직원과 참가자, 고용주 간 3자 회의를 선행한다.

적절한 고용과 운영을 위해 스웨덴의 공공고용서비스가 가진 다양한 재정지원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크라미는 참여자를 위해 개별 맞춤형으로 계획된 후속조치도 장기적으로 제공한다. 크라미의 교정서비스가 시작되면 직업교육과 사회학습과정이 진행되며, 주차별 단계에 따라 운영된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을 추적 관찰하고 이 기간 동안 추가적 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크라미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재통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웨덴의 국가범죄예방위원회에 의하면 크라미는 스웨덴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중 실제 효과성이 높은 3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된다. 나머지 2가지는 의료분야의 프로그램이다[9].

### 2.2 크림프로드(CrimeaProd)

크림프로드는 스웨덴 교정보호청에서 재소자를 위해 제공하는 생산 및 작업 활동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전국 39개의 생산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세탁, 인쇄 등을 포함한 제품 계약생산과 제조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업계의 전문 관리자가 감독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직업적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사회 재통합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크림프로드는 대상자들이 출소 전 충분한 직업적 학습과 지식을 경험하고 향후 의미 있는 취업을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7].

## 3. 상담지원

### 3.1 상담지원 프로그램

스웨덴의 상담지원은 대상자에 따른 재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재활프로그램은 필요 및 대응(Risk, Need, Responsivity, 이하 RNR)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RNR 원칙의 준수는 잘 평가된 개별계획을 갖는 대상자의 특정 범죄발생 위험성이 적절한 개입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한다.

스웨덴 교정보호청에서 제공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준

비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 부스터로 나누어 진행된다. 준비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치료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범죄유발 욕구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용된다. 치료 프로그램은 범죄행위와 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인지행동치료(CBT)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BT 프로그램의 경우 행위에 대한 문제해결이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프로그램에서 익힌 기술을 통해 일상적인 문제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부스터는 치료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 번 이상의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한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7].

### 3.2 인증제도

스웨덴의 교정보호청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캐나다, 영국 등 국외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 스웨덴의 조건에 맞게 조정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인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은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인증에 대한 투자와 비용은 스웨덴 교정보호청에서 지원한다.

치료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불리며, 이들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기 위해 긴 기본교육을 필요로 하고 일하게 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 나아가 프로그램 구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과 훈련을 받는데, 관리자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치료프로그램이 품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인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6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변화 모델이 있어야 한다. 둘째, 대상자 선정이 적절해야 한다. 셋째, 동적 위험요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강도와 민감도가 적절해야 한다. 다섯째, 치료의 무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스웨덴 교정보호청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스웨덴 교정보호청의 평가는 프로그램이 스웨덴 교도소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적어도 하나의 연구가 제시되거나 스웨덴 교정보호청의 전문가 집단

이 연구설계 및 결과가 충분히 증거기반 치료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평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7].

## 4. 기타 법무보호복지제도

### 4.1 사회봉사명령 및 계약처우제

스웨덴에서 자유형에 대한 또 다른 제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및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무불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로 18세~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사회봉사명령이 아니었다면, 단기자유형 적용에 해당된다. 즉, 이는 특별한 종류의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특별한 형태의 보호관찰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계약처우제로, 1988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범죄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전제로 자유형 대신 사회 내에서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것이다. 법원은 이 제재를 확정하기에 앞서 충분히 그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것을 요구한다. 동의를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한다. 이는 2년 이내의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되었다.

스웨덴에서 감독은 순전히 통제하는 임무가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조언하고, 돕고,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스웨덴 보호관찰 서비스는 감독 자체가 재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에 근거하고 인지 행동 치료에 기반한 개입을 포함하는 감독 방법을 구현했다 [10].

### 4.2 시민관찰관

스웨덴 법무보호의 주된 목표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시행하는 데 있다. 때문에 스웨덴의 보호관찰 서비스는 전문가인 공무원과 시민관찰관(layer supervisor)이 협조하여 활동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모두 이들과 관련을 맺는다.

시민관찰관은 공식적 책임이 있는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는데 개인의 여가 시간을 헌신하는 자발적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보호관찰국에서는 전자감시를 통해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방문 및 음주측정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역할을 위해 시민관찰관을 임명하며, 지역사회봉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관찰관을 임명하기도 한다. 또한, 대상자가 언어역량이 불충분하거나 시민관찰관이 개입하여 더 나은 방식으로 충족될 특별한 욕구가 있는 경우 시민관찰관이 임명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근무의 시간에 가정방문과 직장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시민관찰관은 사례별로 임명되며, 전문공무원과 고객 발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시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은 보호관찰 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8].

### 4.3 교도소 자원봉사자

스웨덴의 구금정책은 구금이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일어나 훈련, 치료를 받는 것이 장려된다.

이와 관련해, 구금으로 인해 제소자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웨덴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를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허가된다. 다만, 방문자는 다방면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적합성을 테스트한 숙련된 봉사자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재소자들에게 그룹 대화를 제공함으로써 구금자들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일상적 접촉을 만든다. 이는 재소자의 사회적 경험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8].

## 5. 소결

스웨덴은 1970년대 초 이후 경제적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해 성공적인 혼합 경제체제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여겨져 왔으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교정 정책을 오랜 기간 발전시켜 왔다[3]. 이에 스웨덴의 교정행정은 유럽연합과 유엔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교정보호청에 직원을 배치하기전 전문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첫 번째 국가인 만큼[11],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운영을 추구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주목할만한 점은 스

웨덴에서 법무보호복지제도는 법적으로 교정보호청의 소관이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만을 보장받는다라는 점이다. 이는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법무보호 관련 활동들은 법적으로 의무된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정보호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 참여의 수준은 스웨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대표적인 특징인 시민관찰관 제도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시민관찰관 활동은 개인의 여가시간을 반납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에 헌신하는 매우 자립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민의 참여 정신과 범죄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복지의 업무 부담을 절감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크라미와 크립프로드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취업 지원프로그램은 구금 기간부터 시작하여 출소 후와 취업 준비 및 취업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스웨덴의 낮은 재범률은 취업과 직업 유지가 출소자의 재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편임에도 스웨덴에서 역시 약 29%의 전과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는 전과자의 취업이 이들의 사회 복귀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12].

마지막으로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용되는 인증제도와 기준확립은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를 확립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제도로 판단된다. 즉,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별된 전문가에 의해 검토됨으로써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

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회를 높임으로써 범죄자 교정과 교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제언

출소자가 겪는 열악한 환경과 생활 여건은 이들의 재범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기능의 회복과 같은 요인들 또한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13]. 그러나 출소자의 아내와 아이는 대상자의 수감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14], 경제력을 담당하는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과 시련을 겪기 때문에[15], 수감자와 이들 가정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결코 간단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의 개입 방안이 우선적으로 구체화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교정기관은 범죄자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소통 속에서 범죄자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기관과 범죄자의 연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사회기관은 일관되고 형식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자의 사회 복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무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법무보호복지서비스는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연계가 약함과 더불어 출소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적 체계구축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의 주축이 되

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16].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같이 일찍이 회복적 사범에 기반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교정기관이 갖는 한계를 지역사회기관과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국내의 참고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스웨덴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교정 정책이나 형사 제도가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를 검토하기는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영어권 국가에서도 스웨덴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학술연구가 매우 적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 둘째로, 번역된 자료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보다 학술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전문적이고 상세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치료프로그램 제공서에 고위험군과 중간위험군을 분류한다고 작성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분류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아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향후 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이나 우선 인터뷰 등 여러 접근 경로를 추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피드백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더 풍부한 내용의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1] 범죄통계, 경찰청, 2020
- [2]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sweden>
- [3] 홍봉수, “교정복지 관점에서의 스웨덴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3호, pp.101-134, 2008.
- [4] 권준성, 공정식, 김지은, “출소자 대상 숙식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분석연구 -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 제65호, pp.75-97, 2020.
- [5] 한인섭, “스웨덴의 교정정책과 행형실태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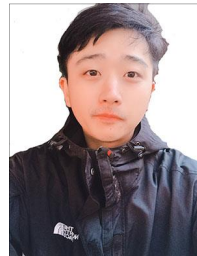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권, 제1호, pp.209-240, 2000.

- [6] <https://www.kriminalvarden.se>
- [7] <https://bra.se/bra-in-english/home/crime-and-statistics/crime-statistics.html>
- [8]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in Sweden, “Probation work in Sweden,” 2018.
- [9] <https://www.krami.se>
- [10] 한인섭,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지역연구, 제3권, 제2호, pp.205-257, 1994.
- [11] <https://www.friendsofcorrections.com>
- [12] J. Hedstrom, “The American and Swedish Criminal Justice System: A Comparative Study,”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pp.1-106, 2018.
- [13] 김정현, 공정식,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 비교연구: IPA기법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1호, pp.392-400, 2019
- [14] 김미현, 이동훈, 강수운,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수감횟수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pp.233-247, 2021.
- [15] 전지열, 이동훈, 양하나, 김주연, “남편의 수감 생활 및 출소 과정에서 경험하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자녀의 발달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6호, pp.1-26, 2018.
- [16] 박상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pp.115-140, 2016.

저 자 소 개

권 준 성(Joon-Sung Kwon)

준회원



- 2019년 2월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심리학석사)
- 2019년 6월 : 한국심리과학센터 부 연구원
- 2020년 4월 : 경기대학교 교육혁신처 연구원

〈관심분야〉 : 범죄심리, 범죄학, 경찰연구

공 정 식(Jung-Sik Gong)

정회원



- 1995년 8월 :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과(교육학석사)
- 2005년 8월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심리학박사)
- 2018년 4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수

〈관심분야〉 : 범죄심리, 피해상담, 안전문화

현 문 정(Mun-Jung Hyun)

정회원



- 2015년 2월 : 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21년 8월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심리학박사)
- 2021년 4월~현재 :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수

〈관심분야〉 : 범죄심리, 비행청소년, 회복탄력성